거주/숙소제공 확인서

0	<u>국</u>		적 :						
0	성		명 :						
0	외국인	등록	번호 :						
0	체	류	지 :	도	시(군)				
	위 외=	국인은	본인	(회사)이 소	유(임대)하고	그 있는			
Γ.					주택 []기E) 에
				합니다.					
)) 파트)의 경우	의대차	계약서	사본 등	등 입증
	서류 침								
				قا	를 월	일			
			_						
	-1	0.1	 .						
	왁	인	자						
		<u>소</u>		속:_			직찬	<u> </u>	
		전	화	번 호:					
		위 외	국인과	의 관계 :	[]고용주 []친척	[]JIE	} ()
		성		명 :				(인/서	l명)

출입국관리사무소장(출장소장) 귀하

<알림>

법무부는 2013.10.10일부터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<u>체류지 입증서류(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 확인서,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, 공공요금 납부영수증, 기숙사비 영수증 등)</u>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니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** 체류지 입증서류는 법령에 따라 징구하는 서류로 <u>미제출 시 체류허가 불허 등 불이익</u>이 발생할 수 있으며, <u>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</u> <u>과태료 처분</u> 등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